

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(폐회중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0.10.20.)

규칙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강 철 구]

목 차

1	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	1
2	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----	4
3	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----	7

거창군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. 9. 22.

나. 발 의 자 : 심재수, 최정환, 김향란, 표주숙, 김종두, 이흥희,
신재화, 이재운, 권재경, 박수자, 권순모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13.

2. 개정이유

○ 거창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관심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「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」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원연구단체 심의 주체 및 심의사항 명확화(안 제4조)

⇒ 심의 주체를 각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회운영위원회로 규정

나. 의원연구단체 등록 절차 및 등록 취소절차(안 제5조 ~ 제6조)

- ⇒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연구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
- 다. 연구활동 기간, 범위, 계획서 제출, 계획 변경, 결과보고서 제출 등(안 제7조 ~11조)
- 라. 정책연구용역 근거 마련(안 제12조 ~ 제15조)
- 마.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지원절차 규정(안 제16조 ~ 제18조)
 - ⇒ 지원한도액(단체당 400만원),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규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예산범위 내
- 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2. ~ 9. 28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3) 비용추계 : 붙임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관심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

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「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」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□ 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거창군의회 포상규칙
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. 9. 22.

나. 발 의 자 : 심재수, 최정환, 김향란, 표주숙, 김종두, 이흥희,
신재화, 이재운, 권재경, 박수자, 권순모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13.

2. 개정이유

- 의원 정수 조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폐지 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등을 일괄개정(2006. 7. 28.)한 이후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포상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함.
-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제5조(표창장) 제3항

⇒ 어려운 한자어 “순화 양양”을 쉬운 우리말 “순화를 복돋
우고”로 개정

나.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제9조(포상절차) 제2항

⇒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**의회운영위원회** 심의로 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1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0. 9. 22. ~ 9. 28.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포상은 의회 현실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,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
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
일부개정규칙안
[검토보고서]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. 9. 22.

나. 발 의 자 : 심재수, 최정환, 김향란, 표주숙, 김종두, 이흥희,
신재화, 이재운, 권재경, 박수자, 권순모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13.

2. 개정이유

○ 의석배정, 의사일정 작성, 경호 등의 업무는 의회 운영 현실에
맞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로 일괄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(의석배정), 제16조(의사일정의
작성), 제20조 제2항(상임위가 명백하지 않은 안건의 회부),
제73조(경호)

⇒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로 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1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0. 9. 22. ~ 9. 28.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석배정, 의사일정 작성, 경호 등의 업무는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